## 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156호

2020. 12. 03.

건 명 논산시정 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열린홍보실)	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11. 16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11. 16.

## 보 고 내 용

- □ 제안이유
  - 우리시 주요 시책과 행정정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논산시 시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- □ 주요내용
  - 「논산시 시정신문 조례」로 제명 변경
  - 현행 '논산시정신문편집위원회'를 폐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정홍보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'논산시 시정신문 실무단'의 구성·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6조 ~ 제11조)
- □ 검토의견
  - 논산시 시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  -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 및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